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수행 업무 중 “법률·수사 지원”이라는 표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상담 및 수사 지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가. 검사에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기관의 장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을 추가함(안 제

23조제2항제2호)

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수행 업무 중 “법률·수사 지원”을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으로 수정함(안 제
46조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안 제46조제3항 중 “법률·수사 지원”을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생략)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u>성폭력피해 상담소</u>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		2. ----- ----- ----- ----- <u>성폭력피해 상담소</u> , 같은 법 제12조의 <u>성폭력</u>

[illegibl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40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임미애·최혁진·이주희
김남근·박해철·채현일
박지원·윤준병·이병진
이재강·정일영·박선원
이수진·김준혁·허성무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담·치료 및 법률·수사 지원 등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이에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및 제4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1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생략)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u>성폭력피해상담소</u> 및 같은 법 <u>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u>	2. ----- ----- <u>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략)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	② ----- -----

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u>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u> 12. ~ 16. (생략) ③ (생략) 제46조(상담시설) ①·② (생략) <u><신설></u>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u>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 12. ~ 1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상담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u>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
---	---